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수집

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②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③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④ 제31조 제1항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 이용 및 제공

①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②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③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④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⑤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3 보호조치 및 파기

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②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③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④ 제27조의3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유효기간제)

4 이용자의 권리 보호

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제31조 제2항·제3항
(법정대리인의 권리)

③ 제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④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⑤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의 수집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1.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 대체적으로 회원가입 과정, 이벤트 시행 과정, 상담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각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과 실제 수집하는 항목이 동일한가?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내용(법정고지사항)은 실제 수집 항목과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된 내용과 수집이용 동의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체크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시 동의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가? ※ 동의 획득 시, 법정고지사항(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취급방침/약관 등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 동의내용(법정고지사항) 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에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참조					❍ (증빙1)000
	4.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동의" 에 미리 표시(디폴트 설정) 한 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음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가? ※ 목적과 보유기간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정되어 있어야 함					
	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법령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 DB 또는 테이블에 분리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DB 또는 테이블에 분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제1호부터 제3호)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근거/목적/보유기간을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함					
	3. 자동 수집 저장 장치에 의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있는가? ※ 자동 수집 저장장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서비스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 필요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개인정보 수집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가? ※ 만 14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불필요하게 본인확인(휴대전화, 아이핀 등)을 강제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정보 또는 14세 미만인지 여부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절차 진행(2014.11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참조)					
민감정보의 수집 제한	**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불필요하게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 민감한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닌 한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					
	2.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가? ※ 반드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선택 동의 항목에 체크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2.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있는가? ※ 필수동의 항목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확인 ※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업무처리)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만 동의를 강제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 회원 가입 시 선택항목의 동의를 거부하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가? ※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2. 회원가입 시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 회원가입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게임법/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나이 및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됨					
	3.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수집 또는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고지하고 있는가? ※ 본인확인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취급방침 비교·대조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는가? ※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2.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야 함					
	3.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면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하여 제출' 하도록 안내하고, 만일 마스킹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체 마스킹 처리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 신분증 사본 등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 후 보관 필요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결과(○표시) N	결과(○표시)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집·이용 동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고지한 사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예) 이벤트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서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은 목적외 이용에 해당 ※ (예)자동수집장치에 의해 동의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계약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목적외 이용에 해당					
	2. 법령 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전자상거래법(거래기록), 국세기본법(납세증빙) 등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것은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 법령 상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영업부서에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필요 (법령 상 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한정하여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 동의 받는 방법 관련,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을 표 형태로 간결하게 알린 후 동의 받아야 함 ※ 특히,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서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해야 함					
	2. 수집·이용 동의절차와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행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포함하여 포괄동의를 받는 행위는 “별도 동의” 의무 위반임					
	3.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여도 해당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면 법 위반임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근거법령이 맞는지 검토하였는가? ※ 관행적으로 근거법령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필요					
	5. 제3자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한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제3자 제공 방법은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방법, 오프라인 전달 방법 등 다양하므로 각 방법별로 유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함					
	6.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제3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철회,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한 경우 제공받은 제3자에게 해당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공받은 제3자와의 유기적 연락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 필요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1.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로 갈음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하였는가? ※ 마케팅 업무 취급위탁, 이벤트 업무 취급위탁 등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한 취급위탁임. 반면,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예:시스템 관리 위탁, 결제·배송업무 위탁 등)					
	2.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위탁받는 자와 위탁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표 형태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필요					
	3.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나아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 수집·이용 동의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는 행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행위는 위법함 ※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해당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위법)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4.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위탁받는 자와 위탁 목적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5.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한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자(수탁자)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 위탁받은 사업자가 동일한가?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된 취급위탁 내용과 실제 취급위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함. 수탁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도 함께 변경하여야 함					
	6.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리 감독, 파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사항은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목적,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무, 위탁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유출금지 의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보호 현황 감사, 영업점 등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7. 영업점 등 수탁자가 취급 가능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수탁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근 가능한 수탁자 직원의 범위도 한정해야 함 ※ 특히, 고객센터(수탁자)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객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 승인을 받아 조회하도록 운영 필요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8. 대리점 및 외부 영업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취하였는가? ※ 대량의 고객정보를 엑셀 등 파일이나 DB형태로 내려 받거나, 출력이 가능한지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메뉴별로 확인하여 조치					
	9. [오프라인 영업점 운영시] 영업점에서 수집하고 있는 가입신청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불가피하게 보관하고 있는 가입신청서가 있다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 영업점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신청서 사본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필요					
	10.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가입신청서 스캔·보관 담당자의 PC에 암호화(파일 암호화 포함)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영업양수등의 개인정보이전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양도자의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모든 사항을 고지하였는가? ※ 고지하는 방법 및 고지사항 확인(양도자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 확인)					
	2. 영업양수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고지하는 방법 및 고지사항 확인(양수자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 확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전과 관련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보관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모두 이전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 필요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2.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는 자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에 반영하였는가? ※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3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결과(○표시) N	결과(○표시)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내부결재를 받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2. 내부관리계획에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시행령 제1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방통위 고시)에 규정된 필수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필수반영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자체 판단에 의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할 필요 ※ 필수반영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4)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5) 개인정보의 암호화 6) 악성프로그램 방지 7) 물리적 접근 방지 8)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9)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10)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업자 관리 등 11)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 12)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중점 확인) 개정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추가사항 : ①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 ②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③ 물리적 접근통제에 관련된 사항					
②접근통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 외부 수탁업체 등에서 본사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 하위 시스템 접근 권한자가 상위 시스템 접근 권한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은지 확인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가? ※ 접근권한 부여·말소 내역 및 인사기록(입사, 휴직, 퇴사, 업무변동 등)을 시스템의 접속기록과 대조 확인하여 정비 필요 ※ 특히 수탁자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수탁자 직원의 퇴사에 따른 계정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가 증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는가?(최소 5년간 보관)					
	4. 외부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VPN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가? ※ 모바일기기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ID, PW 외 다른 인증 수단(VPN 등)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해킹의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증가)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가?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침입방지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호스팅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 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필요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7.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하는가?					
	8.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있는가? ※ 2종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10자리 이상, 3종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8자리 이상 설정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 마련 필요					
	9.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반기마다 변경하였는가?					
	10. 개인정보 보유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 분리하였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 등이 가능한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서 인터넷 연결 등 확인					
	11.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P2P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P2P 프로그램 설치 유무 확인(설치 시 종류, 설치일시, P2P폴더 안에 저장된 공유파일 확인)하여 제한 필요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12.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상 불가피하게 저장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 조치 필요 ※ 모바일 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통제(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1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시간 제한 설정 또는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③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 기록을 저장하는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2.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감독을 수행하는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는가?					
④암호화	1.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복호화 할 수 없는 형태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저장하고 있는가?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3.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내·외부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가? ※ 개인정보 외부 전송시(회원가입, 로그인, 정보변경 등 모든 구간) 보안서버 실행 여부 확인 필요 ※ 보안서버 유형 가.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설정 하는가? ※ PC,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설정여부 확인 필요					
⑤악성프로그램 방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3.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4.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에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⑥물리적 접근 방지	1.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상 위, 캐비넷 등에서 문서가 보관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시정 필요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4. 영업점에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는가? 위탁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가?					
⑦출력·복사 시 보호 조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시 용도를 특정하여,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동 가능한 외부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경우, 허가된 규칙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따라 보여 지는 출력항목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최소화하는 조치 시행					
⑧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최근 퇴사자 또는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육 필요					
개인정보의 파 기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목적과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파기사유(목적 달성, 보유기간 종료, 이용자의 파기 요청)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와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2. 법률상 위무이행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부와 차단된 별도 DB 또는 테이블에 분리 보관하는가? ※ 보관 근거 법률 확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보관기간 확인, 별도 DB 또는 테이블에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영업부서의 접근 제한 등 외부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 현황 확인					
	3.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관련 증명서 등)가 있는가? ※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장하지 않고 파기해야 함 ※ 본인확인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확인 정보만 남기고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전화 고객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 유출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4.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하고 있는가?					
	5.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사회 통념 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의미하며, 종이의 경우 분쇄기를 이용하여 재조합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로우레벨포멧, 랜덤 값으로 여러 번 덮어씌우는 와이핑 방법 등을 이용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참조)					
개인정보의 파 기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유효기간제>	1. 1년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 해야 하는 유효기간제 준수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가? ※ 2015.8.18.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사전 적용 준비 필요 ※ 준비 현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앞서 1년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가? ※ 2015.8.18. 시행이므로 1년 동안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2014.8.18. 이전에 최종 이용기록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별 후 통지절차를 2015. 7.18.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					
	3.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됨. 이용자의 능동적이고 선택 가능한 요청행위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포괄적으로 동의 받은 것은 이용자의 능동적이고 선택 가능한 요청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다른 법률에서 1년과 다른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나, 해당 정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목적 외로는 이용할 수 없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 다른 법률 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 분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정보가 마케팅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5. 유효기간 적용 시 이용기록의 범위를 광고 메일 수신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용기록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의미하며, 단순 광고 전화, 이메일 수신 등은 이용기록으로 볼 수 없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 정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고충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부서장 급인지 확인 ※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경우 -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고충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N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매뉴얼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은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있어야 함					
	2.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유출사고 대응매뉴얼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가?					

4 이용자의 권리 보호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Y	결과(○표시) N	결과(○표시) N/A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이용자의 권 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 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1.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 동의방법보다 쉽게 운영하고 있는가? ※ 동의 철회 또는 열람·제공 요구 시 현장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어렵게 운영하는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웹사이트에 탈퇴 메뉴를 찾기 쉬운 곳에 마련하고 있어야 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2.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이용자가 열람·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10일 이내에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3.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법 정 대리인의 권 리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2.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권리(개인정보의 열람·정정·수집·이용·철회 등)를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요청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확인만하고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이용내역의 통지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인정보 보유수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자] 이용내역 통제 적용대상인 사업자는 연 1회(1월~12월) 대상 사업자인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연 1회 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는가?					
	2. 이용내역을 통지하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을 그대로 알리고 있지는 않은가? ※ 실제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알려야 하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통지방법이라 볼 수 없음					
	3. 이용내역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하면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연결 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가?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연결 후 확인하는 방식은 파밍사이트 연결, 악성코드 유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 개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1.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 등에 공개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법적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수집·이용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절차·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업무내용 및 수탁자,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쿠키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처리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e-mail, SMS 발송 등을 통해 안내					
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가? ※ 법정고지사항을 간결하게 표시하여 동의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 전체를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법,					

구분	관련조문 및 확인사항	결과(○표시)			확인 결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기재)	입증자료
		Y	N	N/A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고지사항 외의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방법은 명시적 동의 원칙에 반함					
	2.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굵은 글씨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알리고 있는가? ※ 수집하는 정보 중 민감정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 제공 등은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음					
	3. 이용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선택 결과를 미리 “동의함”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없음					
	4.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글자크기, 줄간격 등이 이용자가 읽기 쉽도록 마련되어 있는가? ※ 항목구분 글자는 최소 12p, 본문글자는 최소 10p, 줄 간격은 130% 이상이어야 함 ※ 통신사, 유료방송사 등 오프라인 표준서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서식을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함					
	5.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고지사항’을 ‘일상대화 속도’로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	조항 문구	주요 내용	위반시 조치
제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①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②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단, 이용자의 동의나 타 법률에 허용된 경우는 가능 (①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②항)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o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용 금지.** 단, 예외 경우(①항)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2. 법령에서 허용 3. 영업상 목적인 경우 (대상자는 방통위가 고시)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①항 2,3호의 경우에도 대체수단으로 제공(②항)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o 방통위는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다음 사항을 심사로 지정 (①항) 1.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을 통한 안정성확보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o 과태료 (1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본인확인업무의 휴지시(6개월 초과 불가),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 및 방통위 신고 (②항)	
		o 본인확인업무의 폐지시,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 및 방통위 신고 (③항)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o 방통위는 아래의 경우에 6개월 이내로 본인확인업무의 일부 정지나 지정 취소 가능 (①항)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 취소**) 2.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 취소**) 3. 6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또는 6개월 이상 휴지시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과태료 (1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o 수집 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 또는 계약이행이나 요금정산 등 정한 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시 이용자에게 고지 및 동의 획득 (예외, 요금정산, 타법 규정) (①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법률조항	조항 문구	주요 내용	위반시 조치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o 제3자 제공을 받은 자는 제3자 재제공이나 목적외 용도로 이용 금지. (단, 동의 받거나 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 재제공이 가능) (②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취급위탁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 획득 필요. 취급위탁의 미동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③항)	o 과태료 (1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 위탁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①항)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계약이행을 위해 상기 ① 항의 모두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한 경우, 상기 ①항의 고지·동의 절차 생략 가능 (②항)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취급 위탁시 취급 목적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정한 목적외 취급 금지(③항)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④항)	
		o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 해당 수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봄 (⑤항)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이전시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고지 (①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 이용자가 이전을 불원시 그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절차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영업양수자등이 이전받은 경우도 상기와 동일 적용 (①항에서 이미 알린 경우는 제외) (②항)	
		o 영업양수자등은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제공 가능 (단, 별도 동의 획득시 제외) (③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o 제22조①항, 제23조①항 단서, 제24조의2①항·②항, 제25조①항, 제26조③항 단서, 제63조②항에 따른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획득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임원, 이용자고충처리 부서장) (①항)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종업원수(5명 미만), 이용자수(일일평균 1천명 이하) 경우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됨 (②항)	o 시정명령 (제64조4항)

법률조항	조항 문구	주요 내용	위반시 조치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 (①항)	o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될 내용 (②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방법 2. 제3자 제공시 받는자의 성명, 이용목적, 제공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파기 절차·방법 4. 취급위탁시 취급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고충처리부서장 명칭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공지 및 쉽게 인지토록 조치 (③항)	
제27조의3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o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 및 방통위에 신고(①항)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5. 이용자가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o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①항) 1. 내부관리계획 수립의 수립·시행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2.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안전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기술 등 보안조치 5. 바이러스 침해방지조치를 위한 백신SW 설치·운영	o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6. 그밖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보호조치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②항)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o 개인정보 취급 또는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훼손·침해·누설 금지 (①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누설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 금지 (②항)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o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해당 개인정보 대상 (①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목적 달성시 2.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도래시 3. 이용자의 미동의(계약이행, 요금정산, 타 법률 규정)로 수집·이용하고 별도 보관등 규정(3년) 등의 보유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4. 폐업한 경우	o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이용자가 일정기간(대통령령,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 의무 (②항)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o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가능 (①항)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법률조항	조항 문구	주요 내용	위반시 조치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o 본인 관련하여 열람, 제공 및 오류정정 요구 가능 (②항) 1.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제3자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한 현황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이용자가 동의 철회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③항)	
		o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 요구시 지체없이 조치 (④항)	
		o 이용자가 오류 정정 요구시 지체없이 정정 또는 못하는 사유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불가 (⑤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철회,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수집방법보다 쉬워야 함 (⑥항)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영업양수자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준용(⑦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동의를 받고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포함)을 주기적으로 통지 의무 (①항)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항)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그 아동에게 필요 최소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요구 가능 (①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열람 또는 오류 정정의 요구는 제30조③항~⑤항을 준용 (②항)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제32조	손해배상	o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고의 및 과실이 없음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사업자 제공자등이 입증 의무	-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o 망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국제계약 체결 불가(①항)	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의무(②항)	
		o ②항에 따른 동의시 사전 고지 사항(③항)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책임자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o 동의 받아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강구(④항)	
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o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중계유선·음악유선·전송망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준용(①항)	해당 벌칙 적용
		o 수탁자에 관해서는 제22조부터 24조의2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준용 (②항)	